

[별지 제8호 서식(을)]

사업연도	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(을)	사업자등록번호
법인명		

1. 특별부가세 감면세액

①구 분		②근거법조항	코드	③대상금액	④세액	
조 세 특 례 제 한 법	㉑사업전환중소기업 특별부가세 감면	법 제33조	02			
	㉒재래사업장의 이전 특별부가세 감면	법 제35조	22			
	㉓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	법 제36조	23			
	㉔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	법 제37조	24			
	㉕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	법 제38조의2	58			
	㉖기업의 합병, 사업양도·양수 등의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	법 제42조	25			
	㉗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	법 제43조	51			
	㉘금융기관·성업공사 양도차익 특별부가세 감면	법 제48조	05			
	㉙금융기관 등의 합병등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	법 제50조	52			
	㉚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	법 제51조	53			
	㉛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	법 제56조	54			
	㉜지방이전공장양도차익 특별부가세 감면	법 제60조	06			
	㉝법인분사 지방이전 양도차익 특별부가세 감면	법 제61조	07			
	㉞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 이전공장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	법 제63조의2제4항제2호	59			
	㉟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 이전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	법 제63조의2제4항제2호	60			
	㊱자경농지 특별부가세 감면	법 제69조	08			
	㊲목장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	법 제70조	15			
	㊳5년이상 가동공장이전시 특별부가세 감면	법 제71조	16			
	㊴공공사업용토지 등 양도차익 특별부가세 감면	법 제77조	09			
	㊵개발사업시행자 양도차익 특별부가세 감면	법 제78조	10			
	㊶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의 양도차익 특별부가세 감면	법 제79조	11			
	㊷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차익 특별부가세 감면	법 제80조	12			
	㊸학교법인의 토지등 양도차익 특별부가세 감면	법 제81조	18			
	㊹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	법 제82조	20			
	㊺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	법 제83조	55			
	㊻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	법 제84조제1항	56			
	㊼농어민등지원시설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	법 제84조제2항	21			
	㊽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	법 제85조	57			
	㊾장기임대주택 양도차익 특별부가세 감면	법 제97조	13			
	㊿			62		
	㊿			63		
	㉞ 합 계			26		
	㉟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			27		
㊱ 감면세액 합계(㉞-㉟)			28			
㊲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		구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제150조제1항	29			

2. 추가납부세액

⑤구 분		⑥근거법조항	코드	⑦대상금액	⑧세액
조 세 특 례 제 한 법	㉑증자소득공제 적용배제에 따른 추가납부	(구법 제93조 제5항)	31		
	㉒		32		
	㉓		33		
	㉔ 소 계		34		
법 인 세 법	㉕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	시행령 제114조제4항	35		
	㉖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	시행규칙 제27조	36		
	㉗		37		
㉘추가납부세액 합계			38		

22226-00922일
2000. 2. 개정

210mm×297mm
(신문용지 54g/m² (재활용품))

작 성 요 령

1. 특별부가세 감면세액

가. ㉓대상금액란

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을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(별지 제11호 서식)에 의하여 기입합니다.

나. ㉔세액란

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 또는 구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액을 기입합니다.

다. ㉕합계란은 ㉑ 내지 ㉓란의 합계를 기입하고, ㉖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4조에 의하여 감면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기입하며, ㉗감면세액합계란은 ㉓란에서 ㉔란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.

라. 법령등의 개정으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조문순서에 따라 ㉑ 및 ㉓란에 기입합니다.

마. ㉘토지초과이득세 공제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란

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액을 기재하되 그 토지초과이득세액이 당해 유희토지 등의 특별부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부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입하며, 영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토지 등 특별부가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하여 기입합니다.

2. 추가납부세액란

가.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납부세액

추가납부세액계산서(별지 제8호 서식 부표 6)상의 법인세추가납부액(㉑, ㉒, ㉔, ㉕)을 추가납부 구분별로 기입하되 ㉑법인세추가납부액중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외합니다.

나.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

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을 취득하고 취득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만기일 전에 당해 채권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원천납부세액명세서(을) [별지제10호 서식(을)]상의 ㉑법인세란 합계액 중()안의 금액을 ㉔세액란중 ㉕란에 기입합니다.

다.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
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을 기입합니다.

라. 기타

법인세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법인세-특별부가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과 추가납부세액계산서(별지 제8호 서식 부표 6)상의 ㉑법인세추가납부액중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㉕란에 기입합니다

마. ㉙추가납부세액합계란

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3호 서식)상의 ㉖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.